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 2.5. 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- 과장 한성수, 김진호, 홍정배 사무관 ☎ (044) 201-3351, 3340
	공공주택 총괄과	담당자	- 과장 성호철, 양승진 사무관 ☎ (044) 201-4580, 453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금번 주택공급 확대로 인하여,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'21. 2. 5.) >

◆ 20년 무주택에 청약고점인데... 2.4 대책에 120만명 절망

- 정부, 공공 주도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/ 재건축·역세권 등에서 공공분양 많아져
- 청약저축·종합저축으로 청약자격 제한

□ 현재,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'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가입자(이하, '기존통장 가입자')와 '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(이하, '종합통장 가입자')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
- 기존통장 가입자는,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(공공·민영), 저축방식(매월 일정액 불입, 일시금 예치)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
- 종합통장 가입자는, 매월 일정액(2~50만원)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·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.

□ 금번 주택공급 확대방안(공공주도 3080+)에 따라, 공급되는 물량 중

- ① 85㎡(주거전용)를 초과하는 물량은, 기존통장 가입자(청약예금)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② 85m² 이하의 공급물량은,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,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
-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예정입니다.
 -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 사무관(☎ 044-201-3351, 청약통장), 공공주택총괄과 양승진 사무관(☎ 044-201-4580,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